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49,257,579	19,477,727
일반회계	644,813,546	19,344,406
특별회계	4,444,033	133,321
기타특별회계	4,444,033	133,321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27,039	811
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	983,552	29,507
수질개선특별회계	967,835	29,035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55,839	4,675
주차장특별회계	2,309,768	69,29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"채무부담행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"계속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"명시이월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838,17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지방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

제 10 조 조직변경조례(안)이 동일 회기내에서 동시에 의결되었을 경우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·운용할 수 있다

※ 이전재원 표시
국고보조금→국, 균특보조금→균, 기금보조금→기, 시비보조금→시, 특별교부세→교, 특별조정교부금→특, 지방소멸대응기금→대